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·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580호, 2026. 4. 28. 공포, 2026. 10. 29.시행)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령의 목적에 “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사항 규정”을 추가(안 제1조)

나. 교과용 도서 발행·제작자의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(안 제31조의3제1 항 신설)

디지털 파일 제출의 예외 사유로 ‘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디지털 파일의 손상 또는 삭제’와 ‘디지털 파일 관련 소송 진행’을 규정

다.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규정(안 제31조의3제2항~제4항 신설)
교과용 도서의 발행·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27. ~ 9. 7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제4항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제6항”으로, “가격결정”을 “가격결정과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3(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등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9조제5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제출을 요청받은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

2.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표지와 판권지를 포함한 전체 페이지를 교과용 도서 서책과 동일한 순서로 제작한 파일일 것

2. 텍스트 복사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일 것

③ 디지털 파일의 제출 요청을 받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제작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 · 검정·인정·발행·공급·선 정 및 <u>가격결정</u> 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9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 <u>가격결정과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</u> ----- ----.
<신 설>	제31조의3(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등) ① 「초·중등교 육법」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정당한 사유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<u>제출을 요청받은 디지털 파 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 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</u> 2. <u>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 이 진행 중인 경우</u>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발 행 또는 제작한 자가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표지와 판권지를 포함한 전체 페이지를 교과용 도서 서책과 동일한 순서로 제작한 파일일 것

2. 텍스트 복사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일 것

③ 디지털 파일의 제출 요청을 받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제작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56